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정 2000. 4. 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25호

중 략(부칙 참조)

개정 2013.01.2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 4호

개정 2013.02.0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 6호

개정 2013.03.0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 8호

개정 2013.03.2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7호

개정 2013.04.1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1호

개정 2013.05.0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4호

개정 2013.05.1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5호

개정 2013.05.1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6호

개정 2013.05.2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8호

개정 2013.06.1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3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의 종류 및 내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보통예금** :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저축예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듬뿍우대저축예금** :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 **e-Postbank예금** : 인터넷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5) **웰빙우대저축예금** : 웰빙컨셉에 맞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이율을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

6) **주니어우대저축예금** :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수시입출식 예금

7) **2040$^{+\alpha}$ 저축예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가맹점, 법인 등의 편익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8) **기업든든MMDA통장** :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9)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압류방지 전용통장」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저 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10) **우체국청춘연금통장** : 4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와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1)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써 전 국민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12)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 수수료에 민감하고 이용 편리성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금융이용 욕구를 반영하여 미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3) **우체국 e-기업통장** : 기업 인터넷뱅킹 전용 기업자유예금으로 단기 소액예금에도 높은 금리를 받는 기업고객 전용 통장

나. 거치식 예금

1) **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예금

2) **챔피언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 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3) **실버우대정기예금**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 고객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실버전용 정기예금

4) **실버우대연금예금**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 고객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연금 지급식 실버전용 정기예금

5) **주니어우대정기예금** :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저축의식 함양목적 및 주니어전용으로서의 안정적인 목돈운영을 위한 정기예금

6) **이웃사랑정기예금** :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

7) **e-Postbank정기예금** : 인터넷뱅킹으로만 상품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과 연계된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 전용 정기예금

8) **2040$^{+\alpha}$ 정기예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9)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

10) **스마트 정기예금**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정기예금으로 스마트폰뱅킹 이용자에게 우대금리 제공

다. 적립식예금

1) **정기적금** :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

2) **가계우대정기적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후에 약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

3) **이웃사랑자유적금** :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

4) **가족多사랑적금** : 출산율 증대와 경로사상 함양 등의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공익형 예금

5) **주니어우대자유적금** :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자유적립식 예금

6)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 저 신용 서민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본금리 외 연 7.0%p의 특별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7) **2040$^{+\alpha}$ 자유적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8) **우체국 Smart 퍼즐적금** : 미래 금융사업의 주력 채널인 스마트 금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펀(fun) 요소를 가미한 스마트폰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

9) **우체국 재형저축**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적립식 예금 상품

라. 기 타

1) **국고예금** :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2) **환매조건부채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

제3조(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별지1과 같다.

제4조(예치기간 및 이자율)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나. 거치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다. 적립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라. 기타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마. 우대금리

1) 전결 우대금리

구 분	대상 상품	우대이율
본부장전결 우대금리	챔피언정기예금	2.8%p 이내
우체국장전결 우대금리	정기예금(생계형), 챔피언정기예금, 실버우대정기예금, 실버우대연금예금,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이웃사랑정기예금, 2040$^{+\alpha}$ 정기예금	2.0%p 이내

2)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내에서 운영

※ e-Postbank정기예금,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스마트정기예금

3) 우수고객 우대금리

가) 개인고객

(1) Everrich-Premium, Everrich S-MVP, Everrich MVP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챔피언정기예금 정기예금(생계형)	예치기간별 0.05%p~0.15%p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0.05%p -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0.1%p - 24개월이상 36개월이하 : 0.15%p
2040$^{+\alpha}$ 저축예금 2040$^{+\alpha}$ 자유적금 2040$^{+\alpha}$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 Everrich VIP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2040$^{+\alpha}$ 저축예금 2040$^{+\alpha}$ 자유적금 2040$^{+\alpha}$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

나) 법인 및 임의단체 고객 : Everrich-Premium, Everrich S-MVP, Everrich MVP, Everrich VIP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2040$^{+\alpha}$ 저축예금 2040$^{+\alpha}$ 자유적금 2040$^{+\alpha}$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

4) 급여이체자 우대금리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2040$^{+\alpha}$ 저축예금	0.3%p	※ 단, 결산일 기준으로 급여계좌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e-Postbank예금	0.2%p	
챔피언정기예금 (인터넷포함)	예치기간별 0.05%p~0.15%p	-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 0.05%p -12개월이상 24개월 미만 : 0.1%p -24개월이상 36개월 이하 : 0.15%p ※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타 기준에 의한 추가 금리우대는 배제
2040$^{+\alpha}$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alpha}$ 자유적금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창구업무취급시간

구분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1월 ~ 12월	평일 09:00 ~ 16:30	연중 계절 구분 없이 동일함

부칙<제정 2002.6.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 및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2.10.5.>

이 고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11.1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2.12.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3.1.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년 3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③ **(판매중지)** 자유저축예금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신규가입을 중지한다.

부칙<개정 2003.2.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2.1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을 2003년 3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2.18>

① **(시행일)** 제3항(예치기간 및 이자율)의 변경내용은 2003년 3월3일 지급분부터, 제4항(예금의 예입방법 등)의 변경내용은 2003년 3월 10일 신규가입분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2.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2.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대이율적용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3.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4.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4.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고예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5.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5.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7.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③ **(우대이율 지급예금 확대)** 챔피언정기예금에 적용하던 최우수고객 우대이율은 2003년 4월 1일 계약분부터 세금만족정기예금 및 생계형 정기예금에 확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8.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9.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1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12.12.>

①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챔피언정기예금(예치기간 : 1년 이상 2년 미만)의 신규계약금액이 1조원 달성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1	3.0	3.1	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3.4	3.3	3.4	3.3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3.65	3.55	3.65	3.55
-1년이상 2년미만만기	4.2	3.8	4.3	3.9
-2년이상 3년미만만기	4.0	3.9	4.2	4.1
-3년 만기	4.1	4.0	4.4	4.3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1.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3.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3.2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4.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4년 5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유효기간 경과시 적용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의 이율은 이 고시 시행이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4.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6.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7.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8.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8.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9.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9.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11.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1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Card 정기예금 관련사항은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12.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2.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3.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3.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3.31.>

① (예치한도 일시 조정) 제2항의 I-Card정기예금 예치한도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I-Card정기예금 예치한도는 2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I-Card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제3항 서호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현대카드-I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I-Card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최초 가입 후 1년은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 0.3%p를 적용한다. 이 예금 가입 1년 이후 가입 응당일에 자동 재가입된 경우에는 가입 응당일의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 0.2%p를 적용한다.

③ 부칙 제1항 및 제2항은 신규 계약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시점의 가입예금까지만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6.1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8.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

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3%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9.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9.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9.28.>

-

①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년 10월 4일부터 2005년 10월 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0월 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및 I-Card정기예금 포함)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0	3.0	3.0	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3.2	3.2	3.2	3.2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3.4	3.4	3.4	3.4
-1년이상 2년미만만기	4.2	3.5	4.3	3.6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5	3.5	3.6	3.6
-3년만기	3.5	3.5	3.7	3.7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0.7.>

①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년 10월 4일부터 2005년 10월 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0	3.0	3.0	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3.2	3.2	3.2	3.2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3.4	3.4	3.4	3.4
-1년이상 2년미만만기	4.2	3.5	4.3	3.6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5	3.5	3.6	3.6
-3년만기	3.5	3.5	3.7	3.7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② 기존의 단서조항 “2005년 10월 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및 I-Card정기예금 포함)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0.17.>

①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시장금리 우체국예금 수신고 증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기 판매기간 이전에 판매를 중지할 수 있음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0	3.0	3.0	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3.2	3.2	3.2	3.2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3.4	3.4	3.4	3.4
-1년이상 2년미만만기	4.2	3.5	4.3	3.6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5	3.5	3.6	3.6
-3년만기	3.5	3.5	3.7	3.7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0.2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1.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16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3%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1.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1.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1.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2.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항 아호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6.4.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적금 및 듬뿍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6.6.1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챔피언정기예금포함), 환매조건부 채권, 듬뿍우대저축,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6.8.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8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8.24.>

이 고시는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0.26.>

이 고시는 2006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0.26.>

이 고시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1.15.>

①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

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2.13.>

이 고시는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6.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6.21.>

이 고시는 2007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7.13.>

이 고시는 200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7.31.>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9.21.>

이 고시는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9.27.>

이 고시는 2007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11.29.>

① 이 고시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4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단,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12.28.>

이 고시는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2.12.>

이 고시는 200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8.21.>

이 고시는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7.2.>

1. 이 고시는 200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8.11>

1. 이 고시는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9.3.>

1. 이 고시는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9.26.>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0.8.>

1.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0.23.>

1.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1.11.>

1.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1.21.>

1.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2.18.>

1.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2.26.>

1.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12.>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20.>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2.9.>

이 고시는 200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2.18.>

이 고시는 2009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2.11.>

1. 이 고시는 200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3.20.>

1. 이 고시는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4.13.>

1. 이 고시는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4.27.>

1. 이 고시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6.4.>

1. 이 고시는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7.15.>

이 고시는 2009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8.18.>

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9.2.>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9.4.>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9.17.>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0.8.>

1.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0.27.>

1.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2.24.>

1.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2.31.>

1. 이 고시는 2010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1.20.>

1. 이 고시는 2010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2.9.>

1.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2.25.>

1. 이 고시는 2010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3.15.>

1. 이 고시는 2010년 3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3.22.>

1. 이 고시는 2010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3.25.>

1. 이 고시는 2010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4.7.>

1. 이 고시는 2010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4.20.>

1. 이 고시는 2010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5.18.>

1. 이 고시는 2010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6.2.>

1. 이 고시는 2010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6.4.>

1. 이 고시는 2010년 6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3. 예치기간 및 이자율” 중 “라. 정기예금(2)중도해지이율”의 “30일 미만 이율 0.2% 와 30일 이상 경과분 1.0%” 및 “사.정기적금(2)중도해지이율”의 “30일 미만 이율 0.2%”부분은 2010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 7. 01.>

1.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8. 29.>

1. 이 고시는 2010년 8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 9. 8.>

이 고시는 2010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0. 01.>

이 고시는 2010년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29.>

이 고시는 2011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1.17.>

이 고시는 2011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1.31.>

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3.18.>

1. 이 고시는 2011년 3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우수고객제도 변경(2011. 2. 10 시행)에 따른 등급별 우대금리는 2011. 1월 우수고객부터 적용하되, 기존 우수고객은 서비스 기간(선정 후 6개월) 만료 시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율과 이자계산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03.25.>

1. 이 고시는 2011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이전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은 2011년 3월 결산일(3.26)까지는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계산을 하고 2011. 3. 27부터는 매일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변경 고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구분	이율(연 %)	
	법인 및 단체	금융기관
5천만원미만	0.1	-
5천만원~1억원미만	**0.2**	0.1
1억원~5억원미만	**0.5**	**0.3**
5억원~10억원미만	1.0	**0.8**
10억원~100억원미만	**1.4**	**1.1**
100억원~300억원미만	**1.5**	**1.2**
300억원~500억원미만	**1.6**	**1.3**
500억원이상	별도금리	별도금리

부칙<개정 2011.03.28>

1. 이 고시는 2011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5. 3>

1. 이 고시는 2011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5. 13>

1. 이 고시는 2011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5. 20>

1. 이 고시는 2011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0. 27>

1. 이 고시는 2011년 10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계우대정기적금 가입한도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거치식예금의 이자계산방식 및 이웃사랑정기예금 분할해지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거치식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이자계산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 11. 25>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16>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 16>

이 고시는 2012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4. 19>

이 고시는 2012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5. 31>

이 고시는 2012년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6. 11>

이 고시는 2012년 6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6. 18>

이 고시는 2012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9. 10>

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9. 11>

이 고시는 2012년 9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1. 19>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1. 30>

1.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2. (판매중지)『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과 『더불어자유적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을 중지한다.

부칙<개정 2012. 12. 6>

이 고시는 2012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 24>

이 고시는 2013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2. 8.>

이 고시는 2013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3. 8.>

1. 이 고시는 2013년 3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2.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과 『우체국 비과세 재형저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3. 23.>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4. 12.>

1. 이 고시는 2013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3. 『우체국청춘연금통장』 대상 연금 확대는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5. 1.>

1.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5. 10.>

1. 이 고시는 2013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5. 16.>

이 고시는 2013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5. 24.>

1. 이 고시는 2013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2. 『주니어우대저축예금』 『주니어우대자유적금』 우대서비스 변경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6. 13.>

1. 이 고시는 2013년 6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